

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2026. 1.

국 토 교 통 부

# ||| 목 차 |||

I. 개요 및 편성방향 .....	1
II.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	2
III.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	3
1. 수입계획 .....	3
2. 지출계획 .....	4
3. 추정 대차대조표 .....	7
4. 추정 손익계산서 .....	8
5. 기금운영비 .....	9
IV. 융자조건 .....	10

## 1. 개 요

### □ 설치 근거 및 목적

- (근 거)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한다.

- (목 적)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 기금조성 및 운용

- (조성) 융자원리금 회수 등 자체재원과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달
- (운용)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자금 지원,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

## 2. 편성방향

### 편성방향

- ▶ 국민주택 건설 및 저리의 안정적인 주택자금 공급으로 국민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 ▶ 취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 □ 주요특징

-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도시재생·임대주택 리츠 등 다양한 주택도시사업에 지원
-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통해 저소득·서민층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을 포함한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건설 지원
-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주택자금 융자 지원
- 주택의 질적 향상 및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추진

## II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 (자금수입 및 지출계획금액) 2026년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자금수입계획 및 자금지출계획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자금수입계획 금액 : 1,080,530억원
  - 자금지출계획 금액 : 1,080,530억원
- (운용계획) 2026년도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용자기준은 별지와 같다.
- (기금운영비의 지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관리비중 위탁수수료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에 대하여는, 각각 위탁수수료 지급 산식상의 업무량 증감 및 대출금 잔액 증감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2025년도에 미지출된 금액은 2026년도에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경기 활성화와 지원조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주택 건설자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의 대출규모와 대출 조건을 시장금리 동향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 있다.

### Ⅲ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 1.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	비 고
주 택 계 정	[11] 재산수입	4,381,032	
	[52] 정부출자수입	165,901	
	[521] 정부출자수입	165,901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215,131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3,711,715	
	[546] 기타재산이자수입	503,416	
	[12] 경상이전수입	256,961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56,961	
	[593] 법정부담금	4,664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252,297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97,153	
	[69] 잡수입	97,153	
	[691] 기타잡수입	97,153	
	[20]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9,626,282	
	[75] 용자원금회수	19,061,182	
	[754]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19,061,182	
	[78] 정부출자주식매각대	565,100	
	[781] 정부출자주식매각대	565,100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46,263,744	
	[81] 국공채수입	14,100,000	
	[811] 국공채발행수입	14,100,000	
[85] 정부예금회수	32,163,744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18,945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1,644,799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6,078,745		
[91] 전입금	7,211,561		
[911] 일반회계전입금	6,811,561		
[913] 기금전입금	400,000		
[92] 예탁원금회수	11,121,187		
[923] 기금예탁원금회수	11,121,187		
[94] 예수금	17,475,000		
[943] 기금예수금	-		
[946] 기타민간예수금	17,475,000		
[95] 예탁이자수입	270,997		
[953] 기금예탁이자수입	270,997		
소 계(주택계정)		106,703,917	

구 분		2025년 계획	비 고
도 시 계 정	[11] 재산수입	95,540	
	[52] 정부출자수입	3,679	
	[521] 정부출자수입(도시계정)	3,679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91,861	
	[544] 기타민간이자수입(도시계정)	74,544	
	[546] 기타재산이자수입(도시계정)	17,317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13	
	[69] 잡수입	613	
	[691] 기타잡수입(도시계정)	613	
	[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407,667	
	[75] 융자원금회수	407,667	
	[7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07,667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697,248	
	[85] 정부예금회수	697,248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도시계정)	10,000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도시계정)	687,248	
	[40]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48,005	
	[91] 전입금	148,005	
	[915] 계정간전입금(도시계정)	148,005	
소 계(도시계정)		1,349,073	
합 계		108,052,990	

## 2.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	비 고
주 택 계 정	[1000]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3,958,959	
	[1038] 재건축초과이익자체배분	196	
	[401] 재건축초과이익자본이전	196	
	[1041] 주택신보출연	81,056	
	[40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81,056	
	[1042] 이차보전지원	1,972,008	
	[401] 이차보전지원	1,972,008	
	[1043] 주택도시보증공사지원	-	
	[301]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	
	[1071] 이자상환	1,686,700	
	[798]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727,600	
	[799] 국공채이자상환	959,100	
	[1076] 수탁은행관리	218,759	
	[600] 위탁수수료	218,759	
	[1077] 기금운영비	240	
	[634] 기타경비(주택)	240	
	[1100] 분양주택등 지원(융자)	429,478	
	[1131]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	
	[1134] 분양주택지원(융자)	426,978	
[401] 분양주택(융자)	426,978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	비 고
주 택 계 정	[1138] 신도시조성사업지원	2,500	
	[402] 신도시리츠(출자)	2,500	
	<b>[1200] 구입·전세자금</b>	<b>10,301,581</b>	
	[1231]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10,301,581	
	[401]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10,301,581	
	<b>[1300] 임대주택지원(용자)</b>	<b>14,458,448</b>	
	[1332] 국민임대주택지원(용자)	141,838	
	[401] 국민임대(용자)	141,838	
	[1333] 공공임대주택지원(용자)	1,660,855	
	[401] 공공임대(용자)	160,855	
	[402] 집주인임대주택사업	-	
	[404] 민간임대(용자)	1,500,000	
	[1335] 행복주택(용자)	189,078	
	[401] 행복주택(용자)	189,078	
	[1336] 다가구매입임대(용자)	6,378,752	
	[401] 다가구매입임대(용자)	6,378,752	
	[1337] 전세임대주택지원(용자)	5,264,355	
	[401] 전세임대(용자)	5,264,355	
	[1338] 통합공공임대주택(용자)	823,570	
	[406] 통합공공임대(용자)	823,570	
	<b>[1400] 임대주택지원(출자)</b>	<b>8,327,363</b>	
	[1440] 임대주택지원	8,327,363	
	[402] 다가구매입임대출자	5,638,219	
	[403] 전세임대경상보조	260,856	
	[404] 국민임대출자	33,271	
	[407] 영구임대출자	4,091	
	[408] 행복주택출자	9,775	
	[409] 임대주택리츠출자	720,000	
[411] 통합공공임대출자	1,479,278		
[412]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181,873		
<b>[8900] 기금간거래(전출금)</b>	<b>8,122</b>		
[8910] 기금전출(주택도시기금)	8,122		
[891] 복권기금전출(반환금)	8,122		
<b>[9000] 기금간거래(예탁금)</b>	<b>6,523,491</b>		
[9002] 사학진흥기금예탁(주택도시기금)	73,491		
[900] 사학진흥기금 예탁	73,491		
[9003]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6,450,000		
[91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6,450,000		
<b>[9100]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b>	<b>2,400</b>		
[911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주택도시기금)	2,400		
[911] 공공자금관리기금(용자계정) 예수원금상환	2,4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계획	비 고	
	<b>[9200]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b>	<b>5,143</b>		
	[9201]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주택도시기금)	5,143		
	[84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5,100		
	[921]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예수이자상환	43		
	<b>[9300] 계정간거래(전출금)</b>	<b>148,005</b>		
	[9310] 주택계정에서 도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48,005		
	[999] 도시계정 전출	148,005		
	<b>[9700] 여유자금운용</b>	<b>31,610,132</b>		
	[9701] 여유자금운용(주택도시기금)	31,610,132		
	[971] 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148,723		
	[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주택)	31,436,609		
	[973] 기타여유자금운용(주택)	24,800		
	<b>[9800] 차입금 등 원금상환</b>	<b>30,930,795</b>		
	[9850]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주택도시기금)	12,126,195		
	[980] 기타민간예수금원금상환	12,126,195		
	[9860] 국공채원금상환(주택도시기금)	18,804,600		
	[980] 국공채원금상환	18,804,600		
	<b>소 계(주택계정)</b>	<b>106,703,917</b>		
도 시 계 정	<b>[1500] 도시재생활성화</b>	<b>675,670</b>		
	[1510] 도시재생지원	108,579		
	[992] 도시재생사업지원	3,579		
	[997] 도시재생지원(융자)	105,000		
	[998] 도시재생지원(출자)	-		
	[1520] 도시기능증진	564,256		
	[30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43,006		
	[302] 이차보전지원(도시)	3,000		
	[305] 주택정비사업	42,250		
	[992] 노후산단재생지원(융자)	36,000		
	[994] 도시재생씨앗융자	40,000		
	[1530] 위탁관리	2,800		
	[600] 위탁수수료	2,800		
	[1540] 기금운영비	35		
	[634] 기타경비(도시)	35		
		<b>[9700] 여유자금운용</b>	<b>673,403</b>	
		[9701] 여유자금운용	673,403	
	[971] 통화금융기관예치금(도시)	10,000		
	[97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도시)	663,403		
	<b>소 계(도시계정)</b>	<b>1,349,073</b>		
	<b>합 계(주택도시기금)</b>	<b>108,052,990</b>		

### 3. 추정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말(추정)	비 고
자 산	○ 대출금	167,612,528	
	총대출금	173,678,900	
	(대손충당금)	(6,066,372)	
	○ 예치금 및 예탁금	7,388,801	
	○ 투자유가증권	66,246,052	
	○ 미수이자 등	274,237	
합 계		<b>241,521,618</b>	
부 채 와 자 본	○ 청약저축	106,961,376	
	부 채		
	○ 주택채권 및 차입금	71,070,267	
	○ 기타유동부채	17,416,605	
	○ 기타비유동부채	1,274,823	
소 계		<b>196,723,071</b>	
자 본			
○ 기본순자산	343,000		
○ 적립금및잉여금	43,083,228		
○ 순자산조정	1,372,319		
소 계		<b>44,798,547</b>	
합 계		<b>241,521,618</b>	

#### 4.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말(추정)	비 고
수 익  부 문	○ 사업수익	4,210,163	
	- 융자금이자수익	3,788,286	
	- 배당수익	169,580	
	- 국고보조금정산수익	252,297	
	○ 사업외 수익	1,420,113	
	- 자산처분이익	642,170	
	- 복권기금전입금	400,000	
	- 기타	377,943	
	합 계	5,630,275	
비 용  부 문	○ 사업비용	8,108,151	
	- 청약채권이자비용	3,862,505	
	- 국고보조비용	1,526,467	
	- 이차보전비용	1,975,008	
	- 기타	744,171	
	○ 사업관리비	275	
	○ 사업외비용	5,143	
	비 용 계	8,113,569	
	당기순이익	(2,483,293)	
합 계	5,630,275		

## 5. 기금운영비

(단위 : 백만원)

항 목	금 액	비 고
○ 합 계	221,834	
- 위탁 수수료	221,559	- 주택계정 : 218,759백만원 - 도시계정 : 2,800백만원
- 정책연구비	109.5	- 주택계정 : 109.5백만원
- 관서운영비 등	165.5	- 주택계정 : 130.5백만원 - 도시계정 : 35백만원

# IV

## 용자조건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분양주택 등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주인 임대주택 건설·개량형</li> </ul>	가구당 수도권 1억, 광역시 0.8억, 기타 0.6억	1.5	1년거치 8년, 10년, 12년, 16년, 20년 상환 (혼합상환 선택시 원금의 65% 원리금분할상환 및 잔여금액 만기 일시상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임대 목적으로 신축 또는 수선하여 LH 등에 임대관리를 위탁) ※ 임대 위탁기간 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 상환시 위약금리 부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의 경우, 대출기한 연장시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주인 임대주택 매입형</li> </ul>	가구당 수도권 1억, 광역시 0.8억, 기타 0.6억	1.5	8년, 1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LH 등에 임대관리를 위탁) ※ 임대 위탁기간 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 상환시 위약금리 부과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50%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주인 임대주택 용자형</li> </ul>	가구당 수도권 1억, 광역시 0.8억, 기타 0.6억	1.5~2.5% (임차인별 지원금리 차등)	8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초기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제한) - 대출한도는 순담보가격의 70% 이하 - 만기 일시상환은 대출원금의 10% 상환후 2년 단위로 기간연장 - 차주별 대출한도 30억원 이하 - 임차인별 지원금리 차등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분양주택자금 · 전용면적 60㎡이하</li> </ul>	5,500	4.0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 (공공주택법 적용 주택의 경우 4년이내 일시상환)</li> </ul>	-조합주택·유입물건 포함 -건축허가 대상사업의 경우 호당한도 : 3천만원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7,500만원으로 상향  -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대출이율을 0.3%p 인하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고령자(1순위)	무주택 일반인 (2순위)
1.5%	2.5%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7,500	[디딤돌 대출금리] 4.2 [디딤돌 대출금리]	·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대출이율을 0.9%p 인하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 동하되, 미증빙시 연 2.8%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공급 받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 족에게 대환시 연 1.8% 적용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는 다 음에 한하여 지원 · 공공기관에 한하며, 75㎡초과~ 85㎡이하는 공공주택법 적용 주택에 한하여 지원 -공공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 조정(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 -( )는 민간적용 금리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금리 인하를 신청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분양 일부부터 만기일까지 대출이율을 1.0%p 인하
▪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다세대, 연립 - 전용면적 60㎡이하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7,000  7,000	3.8 [디딤돌 대출금리]  4.0 [디딤돌 대출금리]	3년이내 일시상환	-기존 분양주택건설기준 준용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 ·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2.8% ·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1%p 우대  - 금리는 2021년 9월 21일부터 1년간 전용면적 60㎡ 이하 착공물량에 한하여 1.5%p 인하('21.11.22. 이 후 납부하는 이자부터 적용)  -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7,500만원으로 하고, 대출이율을 0.3%p 인하 -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 8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10,000만원으로 하고, 대출이율을 0.8%p 인하
▪ 도시형 생활주택			3년이내 일시상환	-기존 분양주택건설기준 준용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형</li> <li>- 전용면적 60㎡이하</li>   <li>-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li> </ul>	<p>7,000</p> <p>7,000</p>	<p>3.8 [디딤돌 대출금리]</p> <p>4.0 [디딤돌 대출금리]</p>		<p>-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li> <li>·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2.8%</li> </ul> <p>-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m<sup>2</sup>당 대출한도를 150만원(호당 최대 7,500만원)으로 하고, 대출이율을 0.3%p 인하</p> <p>-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m<sup>2</sup>당 대출한도를 200만원(호당 최대 10,000만원)으로 하고, 대출이율을 1.0%p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세대주택자금</li> </ul>	5,000	<p>3.8 [디딤돌 대출금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 2년이내 일시상환</li> <li>·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li> </ul>	<p>-주택의 사업승인 후에도 입주자 앞으로 대환되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대출기간 연장가능</p> <p>-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2.8%</li> </ul> <p>- 금리는 2021년 9월 21일부터 1년간 착공물량에 한하여 1.5%p 인하('21.11.22. 이후 납부하는 이자부터 적용)</p> <p>-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6년 10월 17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2,500만원 상향</p> <p>-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대출이율을 0.3%p 인하하고,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대출이율을 0.6%p 인하</p> <p>- 2025년 10월 27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대출이율을 0.3%p 인하</p> <p>- 2026년 10월 1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p>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가구주택자금</li> </ul>	40,000 (가구당 5,000)	3.8	1년이내 일시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출금의 20%이상(3년차 연장시부터 30%) 상환시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li> <li>* 3년차 연장시 금리 1.5%p 가산 (금리가산은 금리 2.0%로 취급된 분에 한함)</li> <li>- 금리는 2021년 9월 21일부터 1년간 착공물량에 한하여 1.5%p 인하('21.11.22. 이후 납부하는 이자부터 적용)</li> <li>-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60,000만원 (가구당 7,500만원)으로 상향</li> <li>-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은 대출이율을 0.3%p 인하하고,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은 대출이율을 0.6%p 인하</li> <li>- 2025년 10월 27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대출이율을 0.3%p 인하하고, 호당 대출한도를 56,000만원 (가구당 7,000만원)으로 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 내진보강 지원</li> </ul>	단독주택 호당 4,000  공동주택 호당 2,000	1.8	2년거치 8년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진보강을 위해 허가권자에게 건축·대수선 허가(또는 신고)하는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분양주택자금</li> <li>· 전용면적 60㎡이하</li>   <li>· 전용면적60㎡초과~85㎡ 이하</li> </ul>	수도권 9,000 광역시 8,500 기타 8,000  수도권 11,000 광역시 10,500 기타 10,000	3.1 [민간 사업자의 경우 3.6, 디딤돌 대출금리]  3.3 [민간 사업자의 경우 3.8, 디딤돌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 3년이내 일시상환</li> <li>· 입주자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li> <li>·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li> <li>·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2.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주택지원</li> </ul>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피스텔</li> <li>· 고시원</li> </ul>	<p>120/m<sup>2</sup></p> <p>40/m<sup>2</sup></p>	<p>5.0</p> <p>5.0</p>	<p>3년내 일시상환</p> <p>3년내 일시상환</p>	<p>-오피스텔 : 실당 바닥면적 12~50m<sup>2</sup> (최대 6,000만원)</p> <p>-고시원 : 실당 바닥면적 7~20m<sup>2</sup></p> <p>- 금리는 2021년 9월 21일부터 1년간 오피스텔 착공물량에 한하여 1.5%p 인하('21.11.22. 이후 납부하는 이자부터 적용)</p> <p>-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m<sup>2</sup>당 대출한도를 150만원(실당 최대 7,500만원)으로 상향</p> <p>-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오피스텔 건설자금 접수분의 경우 대출이율을 0.3%p 인하하고,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오피스텔 건설자금 접수분의 경우 대출이율을 1.3%p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자가 용자</li> <li>· 전용면적 60m<sup>2</sup>이하</li> <li>· 전용면적 60m<sup>2</sup>초과~85m<sup>2</sup>이하</li> </ul>	<p>9,000</p> <p>11,000</p>	<p>1.8</p> <p>1.8</p>	<p>· 사업자 : 25년이내 일시상환</p>	<p>-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법 적용분양주택(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등)</p> <p>-조합주택·유입물건 포함</p> <p>-공공기관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 조정(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간소음 성능보강</li> </ul>	300	1.8 (무이자)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p>- (대상) 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주택에 층간소음성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배우자 포함)</p> <p>*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세대는 <b>만 19세 미만</b>의 자녀가 1명 이상 세대원으로 구성되어야 함</p> <p>-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li> </ul>	500	2.0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p>- (대상) 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주택에 고성능바닥구조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p>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미분양주택 안심환매 용자)				
▪ 미분양주택 안심환매	매입가격 이내	3.2	2년 만기 일시상환 (1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대상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 보증 사업장 내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주택구입용자)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일반: 20,000 (생초: 24,000) 신혼: 32,000 2자녀:32,000	2.85~4.15	0년 (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부부합산 총소득 연 6천만원(생초, 2자녀 이상 가구 연 7천만원, 신혼부부 연 8.5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 산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 주  *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가계금융복지 조사(통계청)에 따른 소득 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 반올림)  * 대상주택 :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5억이하(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이하)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 연 6천 만원 이하인 무주택소유자(생초 구입자는 연 7천만원)  - DTI 60%이내→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최대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70%)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피해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  - 고정금리, 변동금리, 5년단위 변동 금리, 10년 고정후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신혼가구·생애최 초주택구입자 0.2%p 금리우대, 한부모가 구 0.5%p 금리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금리우대(다른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가입기간 5년(60회 납입)이상 0.3%p, 10년(120회납입) 이상 0.4%p, 가입기간 15년(180회납입) 이상 0.5%p 우대(단, 청약(저축)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제외)(다른 우대금리와 중 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우대하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단, '26.12.31까지 한시 적용)  *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가구 0.2%p 우 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대출 원금 중도상환(40% 이상) 시 대출 잔액에 대해 0.2%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1년 이상 경과 시 신청 가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p>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 시 0.1%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li> <li>* 우대금리는 최대 0.5%p를 상한으로 하되, 3자녀 가구는 최대 0.7%p를 상한으로 설정</li> <li>* 단독세대주(1인가구) 요건 강화</li> </ul> <p>- (주택가격) 5억원 이하→3억원 이하</p> <p>- (대출한도) 2.0억원 이하→1.5억 이하 (생초 2억 이하)</p> <p>- (전용면적) 85㎡이하→60㎡이하</p> <p style="text-align: center;">&lt;만기·소득별 금리현황&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부부 합산소득</th> <th colspan="4">만기별 금리(%)</th> </tr> <tr> <th>10년</th> <th>15년</th> <th>20년</th> <th>30년</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하</td> <td>2.85</td> <td>2.95</td> <td>3.05</td> <td>3.10</td> </tr> <tr> <td>2~4천만원 이하</td> <td>3.20</td> <td>3.30</td> <td>3.40</td> <td>3.45</td> </tr> <tr> <td>4~7천만원 이하</td> <td>3.55</td> <td>3.65</td> <td>3.75</td> <td>3.80</td> </tr> <tr> <td>8.5천만원 이하</td> <td>3.90</td> <td>4.00</td> <td>4.10</td> <td>4.1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li> <li>**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순수 고정금리 0.3%p가산</li> </ul> <p>- 최저금리는 1.50%</p>	부부 합산소득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85	2.95	3.05	3.10	2~4천만원 이하	3.20	3.30	3.40	3.45	4~7천만원 이하	3.55	3.65	3.75	3.80	8.5천만원 이하	3.90	4.00	4.10	4.15
부부 합산소득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85	2.95	3.05	3.10																													
2~4천만원 이하	3.20	3.30	3.40	3.45																													
4~7천만원 이하	3.55	3.65	3.75	3.80																													
8.5천만원 이하	3.90	4.00	4.10	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부부전용 디딤돌 구입 대출</li> </ul>	32,000	2.55~3.85	0년 (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8.5천만원이하,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동일</li> <li>* 대상주택 :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6억이하</li> <li>*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소유자</li> <li>*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피해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li> </ul> <p>- DTI 60%이내→LTV 최대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70%)</p> <p>- 고정금리, 변동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또는 10년 고정후 변동금리 선택가능</p>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p>*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가입기간 5년(60회납입)이상 0.3%p, 10년(120회납입) 이상 0.4%p, 가입기간 15년(180회납입) 이상 0.5%p 우대(단, 청약(저축)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제외)(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p> <p>*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우대하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단, '26.12.31까지 한시 적용)</p> <p>*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가구 0.2%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p> <p>* 대출 원금 중도상환(40% 이상) 시 대출 잔액에 대해 0.2%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1년 이상 경과 시 신청 가능)</p> <p>* 최대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 시 0.1%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p> <p>*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p> <p>* 우대금리는 최대 0.5%p를 상한으로 하되, 3자녀 가구는 최대 0.7%p를 상한으로 설정</p> <p style="text-align: center;"><b>&lt;만기·소득별 금리현황&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부부 합산소득</th> <th colspan="4">만기별 금리(%)</th> </tr> <tr> <th>10년</th> <th>15년</th> <th>20년</th> <th>30년</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하</td> <td>2.55</td> <td>2.65</td> <td>2.75</td> <td>2.80</td> </tr> <tr> <td>2~4천만원 이하</td> <td>2.90</td> <td>3.00</td> <td>3.10</td> <td>3.15</td> </tr> <tr> <td>4~7천만원 이하</td> <td>3.25</td> <td>3.35</td> <td>3.45</td> <td>3.50</td> </tr> <tr> <td>8.5천만원 이하</td> <td>3.60</td> <td>3.70</td> <td>3.80</td> <td>3.85</td> </tr> </tbody> </table> <p>*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순수 고정금리 0.3%p가산  - 최저금리는 1.20%</p>	부부 합산소득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55	2.65	2.75	2.80	2~4천만원 이하	2.90	3.00	3.10	3.15	4~7천만원 이하	3.25	3.35	3.45	3.50	8.5천만원 이하	3.60	3.70	3.80	3.85
부부 합산소득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55	2.65	2.75	2.80																													
2~4천만원 이하	2.90	3.00	3.10	3.15																													
4~7천만원 이하	3.25	3.35	3.45	3.50																													
8.5천만원 이하	3.60	3.70	3.80	3.85																													
<p>▪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 대출</p>	전용 40,000	1.85~2.7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p>-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p> <p>-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p> <p>*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p>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p>특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p> <p>* 대상주택 :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5억이하</p> <p>- DTI 100%이내, LTV 최대 80%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락시 낙찰가의 최대 100% 적용)</p> <p>*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피해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p> <p>- 고정금리, 변동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10년 고정후 변동금리 선택 가능</p> <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주택 구입자·신혼가구 0.2% 금리우대, 한부모가구 0.5%p 금리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p> <p>*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가입기간 5년(60회납입)이상 0.3%p, 10년(120회납입) 이상 0.4%p, 가입기간 15년(180회납입) 이상 0.5%p 우대(단, 청약(저축)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제외)(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p> <p>*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우대하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단, '26.12.31까지 한시 적용)</p> <p>*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가구 0.2%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p> <p>* 대출 원금 중도상환(40% 이상) 시 대출잔액에 대해 0.2%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1년 이상 경과 시 신청 가능)</p> <p>* 최대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 시 0.1%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p> <p>* 우대금리는 최대 0.5%p를 상한으로 하되, 3자녀 가구는 최대 0.7%p를 상한으로 설정</p> <p style="text-align: center;">&lt;만기·소득별 금리현황&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부부 합산소득</th> <th colspan="4">만기별 금리(%)</th> </tr> <tr> <th>10년</th> <th>15년</th> <th>20년</th> <th>30년</th> </tr> </thead> <tbody> <tr> <td>연소득 천만원이하</td> <td>1.85</td> <td>1.95</td> <td>2.05</td> <td>2.10</td> </tr> <tr> <td>2~4 천만원이하</td> <td>2.20</td> <td>2.30</td> <td>2.40</td> <td>2.45</td> </tr> <tr> <td>4~7 천만원이하</td> <td>2.45</td> <td>2.55</td> <td>2.65</td> <td>2.70</td> </tr> </tbody> </table>	부부 합산소득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천만원이하	1.85	1.95	2.05	2.10	2~4 천만원이하	2.20	2.30	2.40	2.45	4~7 천만원이하	2.45	2.55	2.65	2.70
부부 합산소득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천만원이하	1.85	1.95	2.05	2.10																								
2~4 천만원이하	2.20	2.30	2.40	2.45																								
4~7 천만원이하	2.45	2.55	2.65	2.70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대출</li> </ul>	40,000	1.8~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거치 1년 또는 비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금리는 1.20%</li> <li>-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자녀가 대출신청일 현재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li> <li>-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1.3억원 이하,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2억원 이하, 다만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3억원 미만 충족)</li> <li>*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li> <li>* 대상주택 :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9억이하</li> <li>- DTI 60%이내→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최대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70%)</li> <li>*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피해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li> <li>- 금리는 대출만기시 까지 고정금리</li> <li>- 추가출산시 또는 기존자녀에 대하여 우대금리 적용</li> <li>*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li> <li>*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1명당 0.1%p</li> <li>*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가입기간 5년(60회납입)이상 0.3%p, 10년(120회납입) 이상 0.4%p, 가입기간 15년(180회납입) 이상 0.5%p 우대(단, 청약(저축)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제외)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li> <li>*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우대하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단, '26.12.31까지 한시 적용)</li> <li>*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가구 0.2%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li> </ul>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p>* 대출 원금 중도상환(40% 이상) 시 대출 잔액에 대해 0.2%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1년 이상 경과 시 신청 가능)</p> <p>* 최대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 시 0.1%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p> <p>- 최저금리는 1.2%</p> <p>- 특례기간 중 금리(1.8%~4.5%)</p> <p>*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p> <p>* 우대금리는 최대 0.5%p를 상한으로 설정</p> <p style="text-align: center;">&lt;만기·소득별 금리현황&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부부 합산소득</th> <th colspan="4">만기별 금리(%)</th> </tr> <tr> <th>10년</th> <th>15년</th> <th>20년</th> <th>30년</th> </tr> </thead> <tbody> <tr> <td>연소득 2천만원 이하</td> <td>1.80</td> <td>1.90</td> <td>2.00</td> <td>2.05</td> </tr> <tr> <td>2~4 천만원이 하</td> <td>2.15</td> <td>2.25</td> <td>2.35</td> <td>2.40</td> </tr> <tr> <td>4~6 천만원 이하</td> <td>2.40</td> <td>2.50</td> <td>2.60</td> <td>2.65</td> </tr> <tr> <td>6~8.5 천만원 이하</td> <td>2.65</td> <td>2.75</td> <td>2.85</td> <td>2.90</td> </tr> <tr> <td>8.5천만원 ~1억원 이하</td> <td>2.90</td> <td>3.00</td> <td>3.10</td> <td>3.20</td> </tr> <tr> <td>1~1.3억원 이하</td> <td>3.20</td> <td>3.30</td> <td>3.40</td> <td>3.50</td> </tr> <tr> <td>1.3~1.5억원 이하</td> <td>3.50</td> <td>3.60</td> <td>3.70</td> <td>3.80</td> </tr> <tr> <td>1.5~1.7억원 이하</td> <td>3.85</td> <td>3.95</td> <td>4.05</td> <td>4.15</td> </tr> <tr> <td>1.7~2억원 이하</td> <td>4.20</td> <td>4.30</td> <td>4.40</td> <td>4.50</td> </tr> </tbody> </table> <p>*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p> <p>- 특례기간 종료 후 금리</p> <p>*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기간 중 금리에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구입대출의 최저 기본금리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대출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p> <p>*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 적용 다만, 각 소득구간별로 다음의 금리를 하한으로 한다.</p>	부부 합산소득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05	2~4 천만원이 하	2.15	2.25	2.35	2.40	4~6 천만원 이하	2.40	2.50	2.60	2.65	6~8.5 천만원 이하	2.65	2.75	2.85	2.90	8.5천만원 ~1억원 이하	2.90	3.00	3.10	3.20	1~1.3억원 이하	3.20	3.30	3.40	3.50	1.3~1.5억원 이하	3.50	3.60	3.70	3.80	1.5~1.7억원 이하	3.85	3.95	4.05	4.15	1.7~2억원 이하	4.20	4.30	4.40	4.50
부부 합산소득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05																																																						
2~4 천만원이 하	2.15	2.25	2.35	2.40																																																						
4~6 천만원 이하	2.40	2.50	2.60	2.65																																																						
6~8.5 천만원 이하	2.65	2.75	2.85	2.90																																																						
8.5천만원 ~1억원 이하	2.90	3.00	3.10	3.20																																																						
1~1.3억원 이하	3.20	3.30	3.40	3.50																																																						
1.3~1.5억원 이하	3.50	3.60	3.70	3.80																																																						
1.5~1.7억원 이하	3.85	3.95	4.05	4.15																																																						
1.7~2억원 이하	4.20	4.30	4.40	4.50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table border="1"> <tr> <th data-bbox="1023 282 1155 344">부부 합산소득</th> <th data-bbox="1155 282 1414 344">하한금리</th> </tr> <tr> <td data-bbox="1023 344 1155 427">8.5천만원 ~1.3억원 이하</td> <td data-bbox="1155 344 1414 427">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td> </tr> <tr> <td data-bbox="1023 427 1155 490">1.3~1.5억원 이하</td> <td data-bbox="1155 427 1414 611" rowspan="3">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td> </tr> <tr> <td data-bbox="1023 490 1155 553">1.5~1.7억원 이하</td> </tr> <tr> <td data-bbox="1023 553 1155 616">1.7~2억원 이하</td> </tr> </table>	부부 합산소득	하한금리	8.5천만원 ~1.3억원 이하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1.3~1.5억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	1.5~1.7억원 이하	1.7~2억원 이하																						
부부 합산소득	하한금리																																	
8.5천만원 ~1.3억원 이하	8.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1.3~1.5억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																																	
1.5~1.7억원 이하																																		
1.7~2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li> </ul>	미혼 30,000 신혼 40,000	2.4~4.15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청년드림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연소득 7천만원(신혼 1억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청약당첨시 만39세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대상주택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분양가 6억 이하  - DTI 60%이내,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최대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70%)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취득한 피해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  - 금리는 고정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변동금리, 10년 고정후 변동금리 선택가능  * 결혼 시 0.1%p, 최초출산시 0.5%p, 추가출산시 0.2%p 금리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최대 1%p까지 금리 우대하되, 최저금리는 1.5% <만기·소득별 금리현황> (단위 :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007 1682 1187 1738">소득 \ 만기</th> <th data-bbox="1187 1682 1246 1738">10년</th> <th data-bbox="1246 1682 1305 1738">15년</th> <th data-bbox="1305 1682 1364 1738">20년</th> <th data-bbox="1364 1682 1423 1738">30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007 1738 1187 1794">2천만원 이하</td> <td data-bbox="1187 1738 1246 1794">2.40</td> <td data-bbox="1246 1738 1305 1794">2.45</td> <td data-bbox="1305 1738 1364 1794">2.55</td> <td data-bbox="1364 1738 1423 1794">2.70</td> </tr> <tr> <td data-bbox="1007 1794 1187 1850">4천만원 이하</td> <td data-bbox="1187 1794 1246 1850">2.80</td> <td data-bbox="1246 1794 1305 1850">2.85</td> <td data-bbox="1305 1794 1364 1850">2.95</td> <td data-bbox="1364 1794 1423 1850">3.10</td> </tr> <tr> <td data-bbox="1007 1850 1187 1906">7천만원 이하</td> <td data-bbox="1187 1850 1246 1906">3.20</td> <td data-bbox="1246 1850 1305 1906">3.25</td> <td data-bbox="1305 1850 1364 1906">3.35</td> <td data-bbox="1364 1850 1423 1906">3.50</td> </tr> <tr> <td data-bbox="1007 1906 1187 1962">8.5천만원 이하</td> <td data-bbox="1187 1906 1246 1962">3.55</td> <td data-bbox="1246 1906 1305 1962">3.60</td> <td data-bbox="1305 1906 1364 1962">3.70</td> <td data-bbox="1364 1906 1423 1962">3.85</td> </tr> <tr> <td data-bbox="1007 1962 1187 2018">1억원 이하</td> <td data-bbox="1187 1962 1246 2018">3.90</td> <td data-bbox="1246 1962 1305 2018">3.95</td> <td data-bbox="1305 1962 1364 2018">4.05</td> <td data-bbox="1364 1962 1423 2018">4.15</td> </tr> </tbody> </table> * 대출대상주택이 자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소득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40	2.45	2.55	2.70	4천만원 이하	2.80	2.85	2.95	3.10	7천만원 이하	3.20	3.25	3.35	3.50	8.5천만원 이하	3.55	3.60	3.70	3.85	1억원 이하	3.90	3.95	4.05	4.15
소득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40	2.45	2.55	2.70																														
4천만원 이하	2.80	2.85	2.95	3.10																														
7천만원 이하	3.20	3.25	3.35	3.50																														
8.5천만원 이하	3.55	3.60	3.70	3.85																														
1억원 이하	3.90	3.95	4.05	4.15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형 모기지</li> </ul>	20,000	1.8 (수익형)  · 5년이내 : 1.3 · 5년이후 : 2.3 (손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형 :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 년상환</li> <li>· 손익형 : 20년 일시 상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순수 고정금리 0.3%p가산</li> <li>***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되 30년 금 리에서 0.1%p 금리가산</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 주택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 택 세대주에 구입자금 용자</li> <li>* 대상주택 : 85㎡ 이하 6억이하 공동주택(아파트)</li> <li>-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li> <li>*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 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li> </ul>	40,00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상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세대 원 포함)</li> <li>-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 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li> <li>- 대출금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단,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원 대출 (정산비율은 선형 보간법에 따라 산 정하여 적용)</li> <li>* 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단위로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피스텔 구입자금</li> </ul>	7,00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이내 일시상환 (9회 연장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 하인 무주택세대주</li> <li>*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 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 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li> <li>-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이하, 1.5억원이하 주거용 (LTV 50%한도)</li> <li>*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li> <li>* 장애인·다문화가구 0.2% 금리우대</li> <li>* 연소득(부부합산) 2~4천만원이하는 0.3% 금리우대, 2천만원이하는 0.5%금리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안정 구입자금</li> </ul>	20,000	3.1  /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li> <li>-5년거치 25년상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li> <li>*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 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li> <li>- LTV 70%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구입시 용자</li> <li>* 대상주택 : 85㎡ 이하 6억이하</li> <li>-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li> </ul>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장애인·다문화가구 0.2% 금리우대																																				
▪ 부도임대아파트 경락주택 구입자금	주택가격의 80% 범위내	10년간 2.6	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상환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일반입주자 앞 이율 적용(2.8%)																																				
▪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1.5	3년거치 17년상환	-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하되 특별재해지역은 최대 14,370만원까지 가능																																				
<b>○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주택전세융자)</b>																																								
▪ 소년·소녀가정 및 교 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수도권 : 13,000 광역시 : 9,000 기타 : 7,000 (보호대상아동 2명) 수도권 : 15,500 광역시 : 12,000 기타 : 10,500 *보호대상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대출한도 상향	무이자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12월 20일 (1년단위 연장)	-20세이하인 경우 무이자, 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22세 이하인 경우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군복무기간 불산입)에는 대출이율 5 0% 감면, 자립지원기간 도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 (20세를 초과한 경우, 1년 단위로 최대 6 회까지 계약 연장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금	수도권 : 13,000 광역시 : 9,000 기타 : 7,000	2.2 ( 보증금규 모별 지원금리 차등)	대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 12월 20일 (1년단위 연장 가능)	-쪽방 비닐하우스 포함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30백만원, 기타지역 90백만원(단, 85 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수도권·광역시 1. 6억원, 기타 1.3억원) - 청년전세임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수도권</th> <th>광역시</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1인</td> <td>1.2억</td> <td>0.95억</td> <td>0.85억</td> </tr> <tr> <td>2인, 가숙시형</td> <td>1.5억</td> <td>1.2억</td> <td>1억</td> </tr> <tr> <td>3인 이상</td> <td>2.0억</td> <td>1.5억</td> <td>1.2억</td> </tr> </tbody> </table> - 신혼부부 전세임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수도권</th> <th>광역시</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신혼부부 I</td> <td>1.45억</td> <td>1.1억</td> <td>0.95억</td> </tr> <tr> <td>신혼부부 II</td> <td>2.4억</td> <td>1.6억</td> <td>1.3억</td> </tr> </tbody> </table> - 다자녀 전세임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수도권</th> <th>광역시</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다자녀</td> <td>1.55억</td> <td>1.2억</td> <td>1.05억</td> </tr> </tbody> </table>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 비아파트형 전세임대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1인	1.2억	0.95억	0.85억	2인, 가숙시형	1.5억	1.2억	1억	3인 이상	2.0억	1.5억	1.2억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신혼부부 I	1.45억	1.1억	0.95억	신혼부부 II	2.4억	1.6억	1.3억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다자녀	1.55억	1.2억	1.05억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1인	1.2억	0.95억	0.85억																																					
2인, 가숙시형	1.5억	1.2억	1억																																					
3인 이상	2.0억	1.5억	1.2억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신혼부부 I	1.45억	1.1억	0.95억																																					
신혼부부 II	2.4억	1.6억	1.3억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다자녀	1.55억	1.2억	1.05억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수도권</td> <td>광역시</td> <td>기타</td> </tr> <tr> <td>비아파트형</td> <td>2.0억</td> <td>1.2억</td> <td>0.9억</td> </tr> </table> <p>-보증금규모별 지원금리 차등적용</p> <table border="1"> <tr> <td>4천만원 이하</td> <td>~6천만원 이하</td> <td>6천만원 초과</td> </tr> <tr> <td>연 1.2%</td> <td>연 1.7%</td> <td>연 2.2%</td> </tr> </table> <p>-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2%)</li> <li>·청년 1순위, 청년 2·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장애인·장애인가구의 자녀 0.5%p 금리우대(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li> <li>·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2%)</li> <li>·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22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군복무기간 불산입) 50% 감면(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li> </ul> <p>-특별재난지역 전세임대 특별공급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지역</li> <li>·지역별 용자한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용자한도까지 지원 가능</li> <li>·보증금규모별 지원금리도 최초 1회(2년)에 한해 50% 인하, 2년초과 6년까지 기본금리 적용</li> </ul> <p>-전세사기피해자 우선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10년 간 무이자</li> </ul> <p>※ 단,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임대료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2.2%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10년 이후 2.2%(우대금리 미적용)</li> </ul>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아파트형	2.0억	1.2억	0.9억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연 1.2%	연 1.7%	연 2.2%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아파트형	2.0억	1.2억	0.9억															
4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연 1.2%	연 1.7%	연 2.2%																
▪버팀목 전세자금	수도권 12,000 지방 8,000  (2자녀이상) 수도권 25,000 지방 16,000	2.5~3.5 (1.5~1.9)          1.5 (위험 건축물 이주자)	2년이내 일시상환 (최장 10년 가능)  (유자녀가정)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  (위험건축물 이주자)  2년이내 일시상환 (최장 6년 가능)	<p>- 부부합산 총소득 50백만원 이하(단,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안전위험 D, E 등급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단독·다세대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세입자,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의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7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p> <p>* 안전위험 D, E 등급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단독·다세대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소유자의 경우 퇴거주택은 무주택 예외</p> <p>*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 반올림)</p>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p>-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2자녀이상 80%)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 등 결과에 따라 결정</p> <p>*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p> <p style="text-align: center;"><b>&lt;만기·보증금별 금리현황&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보증금 소득</th> <th>5천만원 이하</th> <th>5천만 ~1억</th> <th>1억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하</td> <td>2.50 (1.50)</td> <td>2.60 (1.60)</td> <td>2.70 (1.70)</td> </tr> <tr> <td>2천~ 4천만원</td> <td>2.70 (1.70)</td> <td>2.80 (1.80)</td> <td>2.90 (1.90)</td> </tr> <tr> <td>4천~ 6천만원</td> <td>3.00</td> <td>3.10</td> <td>3.20</td> </tr> <tr> <td>7.5천만원 이하</td> <td>3.30</td> <td>3.40</td> <td>3.50</td> </tr> </tbody> </table> <p>*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p> <p>* 위험건축물 거주자는 1.5% 단일금리 적용</p> <p>* ( )은 부부합산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는 우대금리</p> <p>*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금리 우대하되, 위 1%p 포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p> <p>*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p> <p>* 우대금리는 최대 0.5%p를 상한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3자녀 가구는 각각 1.0%p·1.0%p·1.0%p·0.7%p를 상한으로 설정</p> <p>* 최대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 시 0.2%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p> <p>*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 시 0.1%p 우대하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단, '26.12.31까지 한시 적용)</p> <p>- 최저금리는 1.00%</p>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 ~1억	1억 초과	2천만원 이하	2.50 (1.50)	2.60 (1.60)	2.70 (1.70)	2천~ 4천만원	2.70 (1.70)	2.80 (1.80)	2.90 (1.90)	4천~ 6천만원	3.00	3.10	3.20	7.5천만원 이하	3.30	3.40	3.50
보증금 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 ~1억	1억 초과																					
2천만원 이하	2.50 (1.50)	2.60 (1.60)	2.70 (1.70)																					
2천~ 4천만원	2.70 (1.70)	2.80 (1.80)	2.90 (1.90)																					
4천~ 6천만원	3.00	3.10	3.20																					
7.5천만원 이하	3.30	3.40	3.50																					
-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12,000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000 (그외 34 세이하 청 년)	1.9~3.0   2.2~3.3	24개월 만기 일시상환 (최장 10년 가능) 또는 분할상환 (신규도입)  (유자녀가정)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	<p>- 부부합산 총소득 50백만원 이하 (단,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7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이하인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세대주 대상(무주택세대주)</p> <p>-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p>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p>가 결과에 따라 결정</p> <p>*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p> <p>* 대상주택 : 60㎡ 이하(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p> <p>▪ 25세미만 단독세대주 청년</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소득</th> <th>보증금</th> <th>3억원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하</td> <td></td> <td>1.90</td> </tr> <tr> <td>2천~4천만원</td> <td></td> <td>2.20</td> </tr> <tr> <td>4천~6천만원</td> <td></td> <td>2.60</td> </tr> <tr> <td>7.5천만원 이하</td> <td></td> <td>3.00</td> </tr> </tbody> </table> <p>*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p> <p>-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단,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이며, 신희부부는 7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이하인 만19세 이상 34세 이하(2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의 청년 대상(무주택 세대주)</p> <p>-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p> <p>*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과 동일</p> <p>* 대상주택 : 85㎡ 이하(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p> <p>▪ 그 외 청년(만34세 이하)</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소득</th> <th>보증금</th> <th>3억원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하</td> <td></td> <td>2.20</td> </tr> <tr> <td>2천~4천만원</td> <td></td> <td>2.50</td> </tr> <tr> <td>4천~6천만원</td> <td></td> <td>2.90</td> </tr> <tr> <td>7.5천만원 이하</td> <td></td> <td>3.30</td> </tr> </tbody> </table> <p>*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p> <p>*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우대하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단, '26.12.31까지 한시 적용)</p> <p>* 최대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 시 0.2%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p> <p>*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우대,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우대(중복적용 불가), 중소기업취업청년 0.3%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p> <p>* 우대금리는 최대 0.5%p를 상한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3자녀 가구는 각각 1.0%p·1.0%p·1.0%p·0.7%p를 상한으로 설정</p> <p>- 최저금리는 1.00%</p>	연소득	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90	2천~4천만원		2.20	4천~6천만원		2.60	7.5천만원 이하		3.00	연소득	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20	2천~4천만원		2.50	4천~6천만원		2.90	7.5천만원 이하		3.30
연소득	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90																																
2천~4천만원		2.20																																
4천~6천만원		2.60																																
7.5천만원 이하		3.00																																
연소득	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20																																
2천~4천만원		2.50																																
4천~6천만원		2.90																																
7.5천만원 이하		3.30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li> </ul>	<p>수도권 25,000,</p> <p>지방 16,000</p>	1.90~3.30	<p>2년이내 일시상환 (최장 10년 가능)</p> <p>(유자녀가정)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p>	<p>- 부부합산 총소득 7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p> <p>*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과 동일</p> <p>-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p> <p>*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4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p> <p style="text-align: center;"><b>&lt;만기·보증금별 금리현황&gt;</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보증금 연소득</th> <th>5천만원 이하</th> <th>5천만 ~ 1 억원</th> <th>1억원 ~ 1.5 억원</th> <th>1.5 억원초 과</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하</td> <td>1.90</td> <td>2.00</td> <td>2.10</td> <td>2.20</td> </tr> <tr> <td>2~4천만원 이하</td> <td>2.20</td> <td>2.30</td> <td>2.40</td> <td>2.50</td> </tr> <tr> <td>4~6천만원 이하</td> <td>2.60</td> <td>2.70</td> <td>2.80</td> <td>2.90</td> </tr> <tr> <td>7.5천만원 이하</td> <td>3.00</td> <td>3.10</td> <td>3.20</td> <td>3.30</td> </tr> </tbody> </table> <p>*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p> <p>*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우대하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단, '26.12.31까지 한시 적용)</p> <p>* 최대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 시 0.2%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p> <p>*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p> <p>* 우대금리는 최대 0.5%p를 상한으로 하되, 3자녀 가구는 0.7%p를 상한으로 설정</p> <p>- 최저금리는 1.00%</p>	보증금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 ~ 1 억원	1억원 ~ 1.5 억원	1.5 억원초 과	2천만원 이하	1.90	2.00	2.10	2.20	2~4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50	4~6천만원 이하	2.60	2.70	2.80	2.90	7.5천만원 이하	3.00	3.10	3.20	3.30
보증금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 ~ 1 억원	1억원 ~ 1.5 억원	1.5 억원초 과																									
2천만원 이하	1.90	2.00	2.10	2.20																									
2~4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50																									
4~6천만원 이하	2.60	2.70	2.80	2.90																									
7.5천만원 이하	3.00	3.10	3.20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li> </ul>	24,000	1.3~4.3	<p>2년이내 일시상환 (최장 12년 가능)</p> <p>(유자녀가정)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p>	<p>-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환)</p> <p>-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1.3억원 이하,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2억원 이하, 다만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3억원 미만 충족)</p> <p>*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p> <p>* 대상주택 :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p> <p>-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p>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p>결과에 따라 결정</p> <p>- 특례기간 중 금리(1.3%~4.3%)</p> <p>*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하며,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p> <p>* 우대금리는 최대 0.5%p를 상한으로 설정</p> <p>&lt;만기·보증금별 금리현황&gt;</p>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증금</th> <th>5천원 이하</th> <th>5천만~ 1억원</th> <th>1억원~ 15억원</th> <th>15억 원초과</th> </tr> </thead> <tbody> <tr> <td>연소득 연소득 2 천만원이하</td> <td>1.30</td> <td>1.40</td> <td>1.50</td> <td>1.60</td> </tr> <tr> <td>2~4천만원 이하</td> <td>1.60</td> <td>1.70</td> <td>1.80</td> <td>1.90</td> </tr> <tr> <td>4~6 천만원이하</td> <td>1.90</td> <td>2.00</td> <td>2.10</td> <td>2.20</td> </tr> <tr> <td>6~7.5 천만원이하</td> <td>2.20</td> <td>2.30</td> <td>2.40</td> <td>2.50</td> </tr> <tr> <td>7.5천만원 ~1억원 이하</td> <td>2.55</td> <td>2.65</td> <td>2.75</td> <td>2.85</td> </tr> <tr> <td>1~1.3억원 이하</td> <td>2.90</td> <td>3.00</td> <td>3.10</td> <td>3.20</td> </tr> <tr> <td>1.3~1.5억원 이하</td> <td>3.25</td> <td>3.35</td> <td>3.45</td> <td>3.55</td> </tr> <tr> <td>1.5~1.7억원 이하</td> <td>3.60</td> <td>3.70</td> <td>3.80</td> <td>3.90</td> </tr> <tr> <td>1.7~2억원 이하</td> <td>4.00</td> <td>4.10</td> <td>4.20</td> <td>4.30</td> </tr> </tbody> </table> <p>*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p> <p>- 특례기간 종료 후 금리</p> <p>*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특례기간 중 금리에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최저 기본금리와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p> <p>*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 적용 다만, 각 소득구간별로 다음의 금리를 하한으로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부부 합산소득</th> <th>하한금리</th> </tr> </thead> <tbody> <tr> <td>7.5천만원 ~1.3억원 이하</td> <td>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td> </tr> <tr> <td>1.3~1.5억원 이하</td> <td rowspan="3">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td> </tr> <tr> <td>1.5~1.7억원 이하</td> </tr> <tr> <td>1.7~2억원 이하</td> </tr> </tbody> </table> <p>- 추가출산시 또는 기존자녀에 대하여 우대금리 적용</p> <p>*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p>	보증금	5천원 이하	5천만~ 1억원	1억원~ 15억원	15억 원초과	연소득 연소득 2 천만원이하	1.30	1.40	1.50	1.60	2~4천만원 이하	1.60	1.70	1.80	1.90	4~6 천만원이하	1.90	2.00	2.10	2.20	6~7.5 천만원이하	2.20	2.30	2.40	2.50	7.5천만원 ~1억원 이하	2.55	2.65	2.75	2.85	1~1.3억원 이하	2.90	3.00	3.10	3.20	1.3~1.5억원 이하	3.25	3.35	3.45	3.55	1.5~1.7억원 이하	3.60	3.70	3.80	3.90	1.7~2억원 이하	4.00	4.10	4.20	4.30	부부 합산소득	하한금리	7.5천만원 ~1.3억원 이하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1.3~1.5억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	1.5~1.7억원 이하	1.7~2억원 이하
보증금	5천원 이하	5천만~ 1억원	1억원~ 15억원	15억 원초과																																																										
연소득 연소득 2 천만원이하	1.30	1.40	1.50	1.60																																																										
2~4천만원 이하	1.60	1.70	1.80	1.90																																																										
4~6 천만원이하	1.90	2.00	2.10	2.20																																																										
6~7.5 천만원이하	2.20	2.30	2.40	2.50																																																										
7.5천만원 ~1억원 이하	2.55	2.65	2.75	2.85																																																										
1~1.3억원 이하	2.90	3.00	3.10	3.20																																																										
1.3~1.5억원 이하	3.25	3.35	3.45	3.55																																																										
1.5~1.7억원 이하	3.60	3.70	3.80	3.90																																																										
1.7~2억원 이하	4.00	4.10	4.20	4.30																																																										
부부 합산소득	하한금리																																																													
7.5천만원 ~1.3억원 이하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1.3~1.5억원 이하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p 가산한 금리																																																													
1.5~1.7억원 이하																																																														
1.7~2억원 이하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준 자녀 1명당 0.1%p * 최대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 시 0.2%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우대하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단, '26.12.31까지 한시 적용) - 최저금리는 1.0%																								
▪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24,000 (대환시 40,000)	1.2~3.0	2년이내 일시상환 (최장 10년 가능)  (유자녀가정)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가능)	- 부부합산 총소득 1.3억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자이며, 기존 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세피해금액이 기존 주택 보증금의 30% 이상인 자 - 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자의 경우 피해금액 미적용 * 최우선변제금 대출자(전세사기피해자)는 자산·피해금액 미적용 *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에 따른 소득4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 반올림) -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대환시 5억원) 이하  <만기·보증금별 금리현황>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연소득</th> <th>보증금 1.4억원 이하</th> <th>1.4 ~ 1.7억원</th> <th>1.7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5천만원 이하</td> <td>1.2</td> <td>1.3</td> <td>1.5</td> </tr> <tr> <td>5~6천만원 이하</td> <td>1.5</td> <td>1.6</td> <td>1.8</td> </tr> <tr> <td>7천만원 이하</td> <td>1.8</td> <td>1.9</td> <td>2.1</td> </tr> <tr> <td>0.7~1억원 이하</td> <td>2.1</td> <td>2.2</td> <td>2.4</td> </tr> <tr> <td>1.3억원 이하</td> <td>2.4</td> <td>2.5</td> <td>2.7</td> </tr> </tbody> </table>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우대하되,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단, '26.12.31까지 한시 적용) * 최대 대출한도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 시 0.2%p 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0.7%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	연소득	보증금 1.4억원 이하	1.4 ~ 1.7억원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	1.3	1.5	5~6천만원 이하	1.5	1.6	1.8	7천만원 이하	1.8	1.9	2.1	0.7~1억원 이하	2.1	2.2	2.4	1.3억원 이하	2.4	2.5	2.7
연소득	보증금 1.4억원 이하	1.4 ~ 1.7억원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	1.3	1.5																									
5~6천만원 이하	1.5	1.6	1.8																									
7천만원 이하	1.8	1.9	2.1																									
0.7~1억원 이하	2.1	2.2	2.4																									
1.3억원 이하	2.4	2.5	2.7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p>가)</p> <p>* 우대금리는 최대 0.5%p를 상한으로 하되, 3자녀 가구는 0.7%p를 상한으로 설정</p> <p>* 최우선변제금 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 수령이 불가능한 자는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 초과구간은 아래금리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부부 합산소득</th> <th colspan="3">보증금별 금리(%)</th> </tr> <tr> <th>1.4억원 이하</th> <th>1.7억원 이하</th> <th>1.7억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5천만원 이하</td> <td>1.20</td> <td>1.30</td> <td>1.50</td> </tr> <tr> <td>6천만원 이하</td> <td>1.50</td> <td>1.60</td> <td>1.80</td> </tr> <tr> <td>7천만원 이하</td> <td>1.80</td> <td>1.90</td> <td>2.10</td> </tr> <tr> <td>1억원 이하</td> <td>2.10</td> <td>2.30</td> <td>2.40</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2.40</td> <td>2.70</td> <td>3.00</td> </tr> </tbody> </table> <p>- 최저금리는 1.00%</p>	부부 합산소득	보증금별 금리(%)			1.4억원 이하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	1.30	1.50	6천만원 이하	1.50	1.60	1.80	7천만원 이하	1.80	1.90	2.10	1억원 이하	2.10	2.30	2.40	1억원 초과	2.40	2.70	3.00
부부 합산소득	보증금별 금리(%)																														
	1.4억원 이하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	1.30	1.50																												
6천만원 이하	1.50	1.60	1.80																												
7천만원 이하	1.80	1.90	2.10																												
1억원 이하	2.10	2.30	2.40																												
1억원 초과	2.40	2.70	3.00																												
<p>▪ 주거안정 월세자금</p>	<p>1,440 (매월 60만원씩 2년간)</p>	<p>1.8(일반형), 1.3(우대형)</p>	<p>2년이내 일시상환 (최장 10년 가능)</p> <p>※ 2년 단위 갱신 시 상환비율 하향 (25→10%, 우대형 한정)</p>	<p>- 무주택자 대상 일반형, 우대형으로 구분하여 지원</p> <p>-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p> <p>- (우대형) 아래 가~라. 해당자가 가. 무소득 취업준비생 나. 취업 5년내 사회초년생 (부부합산소득 4천만원 이하, 취업 5년 이내) 다.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라. 주거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p> <p>* 가와 나 는 만35세 이하인 자</p> <p>- 일반형 및 우대형의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p> <p>*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p> <p>- 성실 납부자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 0.2%p 우대</p>																											
<p>▪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p>	<p>10,000</p>	<p>1.5</p> <p>2회차연장 (4년 경과후) 시부터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적용</p>	<p>2년 만기 일시상환 (1회 2년 연장가능, 최대 10년 대출가능)</p>	<p>- 중소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진공, 신·기보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34세 이하의 세대주</p> <p>- 부부합산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맞벌이 50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p> <p>*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p> <p>-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2억원 이하</p>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연 1.5%((고정금리), 1억원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 4,500  월세금: 1,200 (월 50이내)	보증금: 1.3%  월세금: 1.0%(20만 원초과), 0%(20만원 한도)	2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10년 대출가능)	만 19세~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 청년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에서 발표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 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 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수도권 18,000 지방 12,000	1.5~2.7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 만기일 이내 운용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기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로서 '20.8.1.~'21.7.31. 갱신청구권 기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 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지방 2.5억원 이하) 주택 - 추가대출 시 신청자격에 따른 버팀목 상품별 금리 및 심사기준 적용														
▪ 주거취약계층 이주지 원버팀목 전세자금  ·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50  10,000	무이자  무이자 유이자 (1.2~1.8%)	2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20년 대출가능)  2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10년 대출가능)	부부합산 총소득 50백만원 이하, 주거취약가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자 *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금액 : 통계청 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대출금액 전세보증금의 100%이내 * 공공임대주택(50만원 이내), 민간임 대주택(1억원 이내)  대상주택 : 85㎡ 이하(다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 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 대출금액 50백만원 이내 무이자, 50백만원 초과구간은 아래 금리 적용  <보증금별 금리현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 rowspan="2">연소득</th> <th colspan="2">보증금</th> </tr> <tr> <th>2천만원 이하</th> <th>5천만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2천만원 이하</td> <td>1.2%</td> <td>1.5%</td> </tr> <tr> <td>4천만원 이하</td> <td>1.5%</td> <td>1.8%</td> </tr> <tr> <td>4천만원 초과</td> <td>1.8%</td> <td></td> </tr> </tbody> </table> * 장애인 0.2%p 금리우대 *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금리우대(중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시 0.1%p 금리우대 적용 중복적용 가능(단 '26.12.31까지 한시 적용)	연소득	보증금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5%	4천만원 이하	1.5%	1.8%	4천만원 초과	1.8%	
연소득	보증금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5%																
4천만원 이하	1.5%	1.8%																
4천만원 초과	1.8%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최저금리 1.0%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국민임대주택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임대주택자금</li> <li>· 전용면적 35㎡이하</li> <li>· 전용면적 35㎡초과~45㎡이하</li> <li>· 전용면적 45㎡초과~60㎡이하</li> </ul>	<p>5,370</p> <p>7,403</p> <p>10,317</p>	2.1	30년 거치 15년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 주택공사에서 재정지원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임대기간 30년)</li> <li>- 호당용자 한도액은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li> <li>-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조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li> </ul>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행복주택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주택자금</li> <li>· 전용면적 60㎡이하</li> </ul>	<p>6,968</p> <p>(LH)7,816</p>	2.1	30년 거치 15년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형(전용면적 30㎡이하) 주택사업 추진 또는 지자체(지방공사포함)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연 1.0% 적용</li> <li>-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조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li> </ul>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통합공공임대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공공임대주택자금</li> <li>· 전용면적 20㎡이하</li> <li>· 전용면적 20㎡초과~30㎡이하</li> <li>· 전용면적 30㎡초과~40㎡이하</li> <li>· 전용면적 40㎡초과~50㎡이하</li> <li>·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li> <li>· 전용면적 60㎡초과~70㎡이하</li> <li>· 전용면적 70㎡초과~80㎡이하</li> <li>· 전용면적 80㎡초과~85㎡이하</li> </ul>	<p>3,799</p> <p>5,493</p> <p>7,599</p> <p>9,705</p> <p>11,766</p> <p>9,949</p> <p>11,054</p> <p>12,529</p>	2.1	30년 거치 5년 상환 (단, 임대기간 연장 등 감안하여 협의를 거쳐 상환기간 조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당용자 한도액은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li> <li>-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형(전용면적30㎡이하) 주택사업 추진 또는 지자체(지방공사포함)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연 1.0% 적용</li> <li>-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 조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li> <li>-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여 건축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 조정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대출한도 상향 조정 요건과 최대 30%까지 중복 적용 가능)</li> </ul>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공공임대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자금</li> <li>· 전용면적 60㎡이하</li> </ul>	5,500	2.5 [디딤돌 대출금리]	10년(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사업자 등이 건설하는 주택(임대기간 5년 이상)</li> <li>- 건설 중(준공前)인 미분양주택을</li> </ul>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li> </ul>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는 60㎡이하만 해당)	7,500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는 매입가격의 30%)  (세일앤리스백 리츠는 호당 10,000만원)	3.0 [디딤돌 대출금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세일앤리스백 리츠는 1.2%)	경우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동안 거치후 20년 상환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는 10년(10년 연장 가능) 후 일시상환)  (세일앤리스백 리츠는 5년 후 일시상환)	5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주택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받는 경우 대환일로부터 10년간 연 2.5% 적용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 하되, 미증빙시 연 3.0%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로서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LH공사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는 주택은 연 2.5% 적용 · 호당한도 7,500만원 -공공기관 또는 공공임대리츠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 조정(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매입 대상 주택은 서울 5억원 이하, 인천·경기 4억원 이하, 그 외 광역시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 2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H공사 경락자금</li> <li>· 전용면적 60㎡이하</li> <li>·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li> </ul>	경락가격 범위내  경락가격 범위내	2.3 [디딤돌 대출금리]  2.8 [디딤돌 대출금리]	10년(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경우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입주자격 :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 ]는 입주자 대환시 금리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요건 증빙 충족시, 디딤돌 대출금리와 연동하되, 미증빙시 연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다세대 매입임대</li> <li>· 신축다세대</li> </ul>	호당 8,400	2.0	10년 거치 20년 상환	- 민간이 신축하는 60㎡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전세형 임대로 공급하고자 하는자 (공공주택법 적용 주택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임대 주택자금</li> </ul>	7,500 (수도권 1.5억원)	4.0	5년 이내 일시상환	-매입대상 : 신규분양, 미분양 및 기존 아파트 - 신규분양('14.2.26.이후 분양) 주택 ·대출한도 : 6천만원(수도권 1억원)  -공공기관은 연 3.0% 적용 · 임대종료후 분양전환된 주택은 제외 -임대기간동안 1년단위로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시 매년 당초 대출금 원금의 4%이상 의무상환 ※ 신규대출의 경우 5년간의 의무 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공임대 매입자금</li> <li>· 전용면적 60㎡이하</li> <li>· 전용면적60㎡초과~85㎡ 이하</li> </ul>	7,500 (수도권 1.5억원)	2.7	10년 이내 일시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입대상 : 신규분양, 미분양 및 기존주택포함</li> <li>- 신규분양('14.2.26.이후 분양) 주택</li> <li>· 대출한도 : 6천만원(수도권 1억원)</li> </ul>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다가구매입임대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가구매입임대</li> </ul>	시행자별 호당 지원단가의 22.5%~50% 수준	1.5	20년거치 5년상환 (단, 임대기간 연장 등 감안하여 협의를 거쳐 상환기간 조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입대상: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li> <li>· (다가구 매입임대) 서울 9,650만원, 인천 6,900만원, 경기 7,450만원, 부산 6,250만원, 대구 6,250만원, 광주 5,850만원, 대전 5,850만원, 울산 5,850만원, 제주 6,100만원, 기타 5,850만원, LH 7,600만원(주거취약 8,500만원)</li> <li>·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 서울 15,350만원, 인천 8,100만원, 경기 10,000만원, 부산 7,550만원, 대구 7,550만원, 광주 6,700만원, 대전 7,550만원, 울산 7,550만원, 제주 7,550만원, 기타 7,000만원</li> <li>·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II) 서울 24,550만원, 인천 12,000만원, 경기 14,650만원, 부산 12,600만원, 대구 13,350만원, 광주 11,200만원, 대전 12,250만원, 울산 12,600만원, 제주 12,000만원, 기타 10,150만원</li> <li>· (청년 매입임대) 서울 13,450만원, 인천 6,100만원, 경기 6,900만원, 부산 5,950만원, 대구 6,400만원, 광주 5,050만원, 대전 5,750만원, 울산 5,950만원, 제주 5,550만원, 기타 5,300만원</li> <li>· (기숙사형 매입임대) 서울 11,500만원, 그 외 6,000만원</li> <li>· (든든전세 매입임대) 서울 11,047만원, 인천 5,400만원, 경기 6,592만원, 부산 5,670만원, 대구 6,007만원, 광주 5,040만원, 대전 5,512만원, 울산 5,670만원, 제주 5,400만원, 기타 4,567만원</li> <li>· (청년 리모델링 I) 5,250만원</li> <li>· (청년 리모델링 II) 10,000만원</li> <li>· (일반 리모델링) 10,000만원</li> <li>· (고령자 및 고령자리모델링) 8,000만원</li> </ul>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매입임대) 10,250만원</li> <li>· (다자녀 리모델링) 11,500만원</li> <li>· (커뮤니티시설) 20,000만원</li> <li>· (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금액의 50%</li> <li>※ 2024년 11월 10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전환형 매입임대</li> </ul>	시행자별 호당 지원단가의 22.5% 수준	3.0	8년 만기 일시상환 (단, 임대기간 개시일로부터 6년 이후 대상주택 매각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매입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인 주택 중 동 지침 제4조제2항제8호의 전세형 매입임대주택</li> <li>· (든든전세 매입임대) 서울 11,047만원, 인천 5,400만원, 경기 6,592만원, 부산 5,670만원, 대구 6,007만원, 광주 5,040만원, 대전 5,512만원, 울산 5,670만원, 제주 5,400만원, 기타 4,567만원</li> <li>· (미분양아파트 매입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의 정함에 따라 매입한 가격(매매계약서의 금액)의 22.5%</li> </ul>
○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향상(민간임대주택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li> <li>· 전용면적 45㎡이하 -공공지원(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 -공공지원(60세 이상, 20년이상 임대) -사회주택 -30세대이상 장기일반 -29세대이하 장기일반 -준주택</li> <li>· 전용면적 45㎡초과~60㎡이하 -공공지원(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li> </ul>	7,000  9,000  5,000 5,000 5,000 5,000	2.6  2.0  2.0 2.7 3.2 3.2	14년(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만기 일시상환 12~20년(사회주택) 만기 일시상환 24년(공공지원 60세 이상, 20년이상 임대) 만기 일시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li> <li>-호당 용자 한도액 및 금리는 주택규모별로 차등적용</li> <li>-대출기한 연장시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주택 제외)은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상환, 그 외는 10% 이상 상환</li> <li>-의무임대기간 경과후 분양전환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0.1%p, 최대 1.0%p까지 인하</li> <li>※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li> <li>※ 로드맵 발표(17.11.29) 이전에 이미 부지가 확보(민간제안사업 기투위, LH·HUG 택지공모 공고,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회의결 기준)된</li> </ul>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포함)				사업은 종전 용자한도 및 이율 적용
- 공공지원(60세 이상, 20년이상 임대)	12,000	2.3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사업장 대상, 전세로 공급하는 물 량에 대해서는 0.2%p 인하 -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 (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모(2024년 6월 30 일 이전 공고분에 한함)에서 우선협상 자로 선정된 경우 및 2024년 6월 3 0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촉진지구 로 지정된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2, 000만원 상향 (23.10.18 이후 기금투자심 의위원회 승인 사업장에 한함)  -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 지 오피스텔 건설자금 접수분의 경 우 대출이율은 면적과 상관없이 연 3.0%로 적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이 거나, 100호 이상을 신규로 건설하 는 법인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 2,0 00만원 상향(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 용 불가)  ※ 2024년 10월 17일까지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접수 분은 종전 금리 적용 ※ 2025년 4월 4일까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을 신규로 건설하는 법인의 경우 종전 금리 적용  ※ 2025년 5월 15일까지 승인(기금출 자리츠의 경우 출자승인요청 포함) 및 실행된 모든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은 2025년 5월 16일부터 '25.5.15.기준 적 용금리에서 0.2%p 인상된 금리 적용 (단, 60세 이상 임차인 대상 20년 이 상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인상 제외)  - 2025년 10월 27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의 경우 대출이율을 0.2%p 인하하고, 호당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주택 유형이 다세대, 오피스텔인 경우)
- 사회주택	8,000	2.3		
- 30세대이상 장기일반	8,000	3.0		
- 29세대이하 장기일반	7,000	3.5		
- 준주택	7,000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공공지원(주거,준주거지역 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	12,000	3.4		
- 공공지원(60세 이상, 20년이상 임대)	14,000	2.8		
- 사회주택	10,000	2.8		
- 30세대이상 장기일반	10,000	3.5		
- 29세대이하 장기일반	9,000	4.0		
- 준주택	9,000	4.0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다가구)</li> <li>(단지형 단독주택)</li> </ul>	50,000 (가구당 6,000)  6,000	3.0 (2.0)	14년(공공지원·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만기 일시상환 8~20년(사회주택) 만기일시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및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li> <li>- ( )는 사회주택 적용 금리</li> <li>- 대출기한 연장시 당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li> <li>※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li> <li>-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대출한도를 10% 상향 조정(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20% 상향)</li> <li>- 도심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택지공모 제외)을 대상으로 용자한도를 호당 2천만원 상향(21.11~)</li> <li>※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사업장 대상,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0.2%p 인하</li> <li>- 공공지원(택지공모) 민간임대주택 대상 용자한도를 호당 2천만원 상향</li> <li>- 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다가구주택 접수분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를 700백만원(가구당 75백만원)으로 한다.</li> <li>-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을 신규로 건설하는 법인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 2,000만원 상향(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다가구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전세형 준주택)</li> </ul>	15,000	1.7	14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만기 일시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하는 주거용 오피스텔</li> <li>- 대출기한 연장시 당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li> <li>※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li> <li>· 전용면적 45㎡이하</li> <li>- 공공지원(주거,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li> <li>- 공공지원(60세 이상, 20년 이상 임대)</li> <li>- 사회주택</li> <li>- 장기일반</li> <li>- 준주택</li> </ul>	7,000  7,000  5,000  5,000  5,000	2.6  2.0  2.0  2.2  3.2	10년(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만기 일시상환 12~20년(사회주택) 만기 일시상환 20년(공공지원 60세 이상, 20년 이상 임대) 만기 일시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li> <li>- 호당 용자 한도액 및 금리는 주택규모별로 차등 적용</li> <li>- 대출기한 연장시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주택 제외)은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상환, 그 외는 10% 이상 상환</li> <li>-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분양전환하지 않은 경우 1년마다 0.1%p, 최대 1.0%p까지 인하</li> <li>※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li> </ul>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45㎡초과~60㎡이하</li> <li>-공공지원(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li> <li>-공공지원(60세 이상, 20년이상 임대)</li> <li>-사회주택</li> <li>-장기일반</li> <li>-준주택</li> </ul>	10,000	2.9		위약금리 부과 ※ 로드맵 발표(17.11.29) 이전에 이미 부지가 확보(민간제안사업 기투위, L H·HUG 택지공모 공고, 정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회의결 기준)된 사업은 종전 용지한도 및 이율 적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장·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단(18.9.14)을 전국으로 확대(19.2~)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을 신규로 매입하는 법인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 2,000만원 상향(공공지원민간임대에 한함)  ※ 2025년 4월 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이 100호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을 신규로 매입하는 법인의 경우 종전 금리 적용  ※ 2025년 5월 15일까지 승인(기금출자리츠의 경우 출자승인요청 포함) 및 실행된 모든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은 2025년 5월 16일부터 '25.5.15.기준 적용금리에서 0.2%p 인상된 금리 적용(단, 60세 이상 임차인 대상 2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인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li> <li>-공공지원(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포함)</li> <li>-공공지원(60세 이상, 20년이상 임대)</li> <li>-사회주택</li> <li>-장기일반</li> <li>-준주택</li> </ul>	10,000	2.3		
	8,000	2.3		
	8,000	2.5		
	7,000	3.5		
	12,000	3.4		
	12,000	2.8		
	10,000	2.8		
	10,000	3.0		
	9,00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다가구)</li> </ul>	50,000 (가구당 6,000)	3.0 (2.0)	10년(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만기 일시상환 8~20년(사회주택) 만기일시상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매입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는 사회주택 적용 금리 -대출기한 연장시 당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 신규대출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내 대상주택 매도 또는 중도상환시에는 위약금리 부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장·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단(18.9.14)을 전국으로 확대(19.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상 용지한도를 호당 2천만원 상향
○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지원 용자</li> </ul>	총사업비의 50% 단 리츠사업의 경우, 민간출자 비율 - 1% 미만 시 - 30% 이내 - 1%~3% 시	2.5 (변동금리) 단,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13년 이내 일시상환 (단 복합역사 개발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은 최장 35년까지 지원)	-용자대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리츠) 등 사업시행자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40% 이내 - 3% 이상 시 50% 이내	리츠(공공지분 51%이상)는 2.3% * 기존사업장 2.5% 단,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은 2.1%, 리츠는 2.0%		
▪ 공간지원리츠 용자	총사업비의 50%	2.1% (변동금리) * 기존사업장 1.8%	13년 이내 일시상환	-용자대상: 도시재생사업, 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 운영하는 리츠
▪ 도시재생씨앗 용자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용자)	총사업비의 70% 이내 (담보인정가액 이내) * 임차자금은 임차보증금 의 90% * 도시재생분 야와 관련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및 사회 적기업”인 경우 최대 80% * 사업지가 투기 과열지구 내에 위치하거나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높은 경우 한도 40%까지 제한(두가지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 제한)	2.4% (변동금리, 우대최대 1.9%) 사업시행자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 주체인 경우, 사업유형이 생활SOC 조성인 경우 2.2% (우대 최대 1.7%) * 주택복합시 40% (우대최대 3.5%) * 2021.7.1. 이전 신청 사업의 경우 2.1%(변동 금리)	7년 만기 일시상환 (원리금(원금) 분할 상환 가능) * 용자기간 1년 단위로 최대 5회 연장가능(총 12년) * 지자체 등 5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총 17년)	-용자대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및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포함한다)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상가소유자, 청년창업자 등 개인
▪ 가로주택정비사업 용자	구역별 총사업비의 50% 이내 (공적임대주택 또는 정비기반· 공동이용시설 공급시 한도 70%)	2.2% (변동금리) 단, 빈집을 활용하거나 공공 참여시 1.9% * 사업구역 내 빈집이 10호 이상 또는 빈집의 대지면적이 전체 사업 면적의 20% 이상	5년 만기 일시상환 (준공후 6개월 이내) * 용자 중도상환 가능 * 공공 참여 또는 용자금 5% 이상 상환 시 연장 가능(최대 7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대상 -초기사업비 지원 :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지원, 총사업비의 5% 이내(한도 15억원) -본 사업비 지원 :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준공인가 시까지의 사업비 지원, 총사업비의 50%(既往지원된 초기사업비 포함) 이내 -공적임대주택 공급시 본 사업비 한도 상향 :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연면적 또는 총 건설예정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연면적 또는 총 건설예정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경우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p>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p> <p>-공공참여시 본 사업비 용자시기 : 공공이 시행(공동시행 포함)하는 사업은 사업시행인가신청 이후부터 용자 지원 가능</p> <p>-정비기반·공동이용시설 공급 시 본 사업비 한도 상향 : 연면적 5% 이상을 정비기반·공동이용시설으로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p>
<p>▪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자</p>	<p>구역별 총사업비의 50% 이내 (공적임대주택 또는 정비기반·공동이용시설 공급 시 한도 70% 상향)</p>	<p>2.2% (변동금리) 단, 빈집*을 활용하거나 공공 참여시 1.9% *사업대상 주택에 빈집이 1호 이상 포함된 경우</p>	<p>5년 만기일시상환 (준공후 6개월 이내)</p> <p>*용자 중도상환 가능</p> <p>*공적임대주택 공급시 연장가능 (총 10년)</p>	<p>-『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18.2.9.) 이후 적용</p> <p>-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토지등소유자 또는 공동시행자) 대상</p> <p>-초기사업비 지원</p> <p>·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의 초기사업비 지원, 총사업비의 20% 이내</p> <p>· 공공이 시행(공동시행 포함)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40%까지 지원</p> <p>-본 사업비 지원 :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준공인가 시까지의 사업비 지원, 총사업비의 50%(既지원된 초기사업비 포함) 이내</p> <p>-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한도 상향 :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연면적 또는 총 건설예정 세대수의 10% 이상 20%미만을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연면적 또는 총 건설예정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p> <p>-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용자기간 연장 : 연면적 또는 총 건설예정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직접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기간 연장</p> <p>-정비기반·공동이용시설 공급 시 본 사업비 한도 상향 : 연면적 5% 이상을 정비기반·공동이용시설으로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p>
<p>▪ 노후산단재생 용자 (복합개발)</p>	<p>총사업비의 50% 이내 용자신청금액 제한(650억) 매입비 산정기준 제한</p>	<p>2.4% (변동금리) *기준사업장 2.3%</p>	<p>13년이내 일시상환</p>	<p>-용자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p>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노후산단재생 용자 (기반시설조성)	총사업비의 70% 이내 (담보인정가액 이내)	2.2% (변동금리) * 기존 사업장 1.8%	10년 이내 일시상환 (원리금(원금)분할 상환 가능)	-용자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
▪ 노후산단재생 용자 (리모델링)	총사업비의 70% 이내 (담보인정가액 이내)	2.2% (변동금리) * 기존 사업장 2.1%	10년 이내 일시상환 (원리금(원금)분할 상환 가능)	-용자대상: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 업시행자 (다만,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의한 반파·전파 공장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산단 내 이전·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공장건설비 지원)
▪ 주택정비사업 용자 (조합)  -연면적 · 30만㎡미만 · 30만㎡이상~40만㎡미만 · 40만㎡이상~50만㎡미만 · 50만㎡이상	(조합당)  300,000 400,000 500,000 600,000	2.2	-조합설립 ~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내 일시 상환(최대 5년)  -최대 2년 조건부 연장 가능  * 단, 사업계획승인 시 1년 내 일시 상환	-(대상) 조합설립 ~ 사업계획승인 정비조합  * '25.1월 기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역은 제외  -(용자한도) 구역별 연면적에 따른 한도 내에서 지원 심사를 거쳐 지원  * 서울시의 경우 총 지원액(기금+서울시)이 일정수준(기금+서울시 한도 합계의 7 0%)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금용자 한 도 조정  -(이자) 조합이 월별/분기별 납부 또는 후불제(만기일시) 중 선택  -(담보) HUG 보증서  -(인출) 당년도 내 분할인출 허용  ※ 단, '25년12월1일~'26년12월31일 내 사업·신청 승인 건에 한하여 용자기 간 내 금리 1%(조합, 추진위) 및 보증 료 인하
▪ 주택정비사업 용자 (추진위)  -연면적 · 20만㎡미만 · 20만㎡이상~30만㎡미만 · 30만㎡이상~40만㎡미만 · 40만㎡이상~50만㎡미만 · 50만㎡이상	(추진위당)  10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2.2	-추진위구성 승인~조합 설립인가 후 1년 내 일시 상환(최대 5년)  * 최대2년 조건부 연장 가능	-(대상) 추진위 구성승인~조합설립인가  * '25.1월 기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역은 제외  -(용자한도) 구역별 연면적에 따른 한 도 내에서 지원 심사를 거쳐 지원  * 서울시의 경우 총 지원액(기금+서울 시)의 70% 한도 내에서 중복 지원 허용  -(이자) 추진위가 월별/분기별 납부 또 는 후불제(만기일시) 중 선택  -(담보) HUG 보증서  -(인출) 당년도 내 분할인출 허용  ※ 추진위 상품은 당해연도 주택정비 사업 예산의 20% 상한내에서 추진

(단위 : 만원, %)

자금종류	호당용자 한도액	연이율	용자기간	비고
				※ 단, '25년12월1일~'26년12월31일 내 사업·신청 승인 건에 한하여 용자 기간 내 금리 1%(조합, 추진위) 및 보증료 인하